

정 관

코웨이 주식회사

정 관

코 웨 이 주 식 회 사

제정	1989. 5. 1		
개정	1989. 7.21	1989.12.29	1992. 4. 1
	1992. 8.12	1994. 3.24	1994.12.30
	1995. 3.21	1995.12.30	1996. 3.27
	1997. 2.15	1998. 3.23	1999. 3.23
	1999. 11.20	2000. 3.17	2001. 3.16
	2002. 3.15	2005. 3.28	2006. 3.24
	2008. 3.21	2008. 8.12	2009. 3.20
	2010. 3.19	2012. 3.23	2012.11.27
	2013. 3.22	2014. 3.21	2017. 3.28
	2018. 3.23	2019. 3.21	2019. 3.29.
	2020. 2. 7	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상호) 당 회사는 코웨이 주식회사라고 부르며, 영문으로는 COWAY Co., Ltd.라고 표기한다.

제 2 조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정수기 제조·판매업
2. 가정용 기기 제조·판매업
3. 수질, 대기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
4. 정수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제조·판매업 및 사업시설관리업
5. 환경관련 기술연구, 대기 및 수질분석, 환경영향평가 대행업
6. 수출입 및 무역업
7. 부동산 임대·개발·관리·투자·판매업
8. 수입·제조한 각종 상품에 대한 렌탈업
9. 잡화류 판매업
10. 배관자재 제조·판매업
11. 의료기기 수출입·제조·판매업
12. 방문판매·통신판매·전자상거래업 및 이에 부수한 서비스업
13. 시스템 키친 및 가구 제조·판매업
14. 위생용 도자기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·판매업
15. 실내가향제 제조·판매업

16. 도어락, 경보시스템 등 각종 보안설비 및 장치 제조·판매업
17. 액체 여과기 제조, 판매 및 렌탈임대업
18. 헬스기기 수출입·제조·판매업
19. 사회교육시설 운영업
20. 다이오드,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
21. 공기조화장치 제조업
22. 경비업
23. 소독 및 구충, 일반 청소 등 생활환경개선사업
24. 커피, 식품첨가물, 일반 식품 등 수입·가공·판매업
25.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수입·판매업
26. 오수/폐수/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 및 사업시설 관리업
27. 자가측정 대행업
28. 화장품 제조기술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
29. 환경산업 설비, 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업
30. 산업환경설비 건설업
31. 신용카드모집, 보험상품중개, 멤버스카드의 발급 및 이에 수반한 서비스 등 각종
금융상품의 판매·자문업
32. 판매·시공·설계한 상품 및 시설 등 또는 기타 상품의 설치·유지·보수·안전
규격시험 등의 서비스업
33. 통신기기 등의 대리점 또는 위탁판매업
34. 시장조사 및 광고업
35. 실내건축공사업
36. 피부미용기기 수출입·제조·판매업
37. 피부미용업
38. 전기공사업
39.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입 및 제조·판매업
40.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
41.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·판매업
42.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
43.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
44. 화장실 설치형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이와 부수한 서비스업
45. 수질개선 및 기능성 용수 제조기 제조 및 판매와 임대업
46. 공기질 측정 및 분석서비스업
47. 다중이용시설 공조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업
48. 침대 및 침구 관련 제품의 제조, 수입, 판매, 렌탈 및 유지관리 서비스업
49. 집안 환경 관련 청소 서비스업
50.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

- 51.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 서비스업
- 52. 발전사업, 전기판매사업 등 전기사업
- 53.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

제 3 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
- ① 당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내에 둔다.
-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(광고방법) 당 회사의 광고는 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coway.co.kr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 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 主 食

제 5 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,000,000 주로 한다.

제 6 조(일주의 금액)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.

제 7 조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 당 회사는 설립시에 60,000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
제 8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,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9 조(우선주식의 수와 내용)

-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.
-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년 5%이상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.
-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- ④ 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-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

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
- ⑥ 당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,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0조(신주의 배당 기산일) 당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53조의 제1항의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11 조(주식의 발행 및 배정)

- ① 당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
 - 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
 - 2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-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
 - 1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
 - 2.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 - 3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

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
-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 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
-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주식매수선택권)

- ①당 회사는 임직원(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상법 등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상법 등 관계법규가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.
-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, 경영,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-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상법 등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.
-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 -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 - 나. 당해 주식의 권면액
 - 2.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-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
-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
-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
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13 조(명의개서대리인)

- ①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-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④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14 조(삭제)

제 15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- ①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②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16 조(소수주주에 대한 보호)

- ①주주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한다
- ②상법 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사의 업무집행, 재산상태,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,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사 채

제 17 조(사채의 발행)

- ①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7 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

- ①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1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제 1 항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 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
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
-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 발행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제 1 항의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,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.
-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8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

- 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
-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
 - 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
 -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
 -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
-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 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

정할 수 있다.

- ⑥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8 조의 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19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 13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 4 장 ㉑ 주주총회

제 20 조(소집시기)

- ①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월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21 조(소집권자)

-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2 조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상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전자적 방법의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23 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(충청남도)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4 조(의장)

-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로 한다.
-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5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·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6 조(주주의 의결권)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.

제 27 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①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당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 1 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 부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.

제 29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

제 30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 5 장 □ 이사 · 이사회

제 31 조(이사의 수)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, 이사 중 일부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되 사외이사의 수,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32 조(이사의 선임)

-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- ②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2 조의 2(사외이사 후보의 추천)

-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- ②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33 조(이사의 임기)

-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, 다른 결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.
- ②제 1 항의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.

제 34 조(이사의 보선)

-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31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.

제 35 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

- ①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.
- ②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다.

제 36 조(이사의 직무)

-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6 조의 2(이사의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)

이사는 업무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36 조의 3(이사의 경업금지)

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당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. 그러나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7 조의 2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

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
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(경업금지),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38 조(이사의 보고의무)

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9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
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 일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각 이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제 2 항을 준용한다.

④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가 담당하며,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한 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0 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

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 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41 조(이사회 의의사록)

- ①이사회 의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42조(위원회)

- ①당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
 1. 경영위원회
 2. 감사위원회
 3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각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-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9 조, 제 40 조 및 제 4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3 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

- ①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
-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

제 44 조(상담역 및 고문) 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 6 장 감사위원회

제 45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
-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

제 46 조(감사위원회의 직무)

- ①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 47 조(감사록)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제 6 산

제 48 조(사업년도)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년 1회로 하며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.

제 49 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

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차대조표

2. 손익계산서

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
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
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 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
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0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.

제 51 조(이익금의 처분)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
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배당금
4. 임의적립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

제 52 조 (이익배당)

-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
-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제 53 조 (분기배당)

-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,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기 배당을 금전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(준비금의 자본전입, 주식배당, 전환사채의 전환청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-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 9 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.

제 54 조 (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제 8 장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

제 55 조 (내부거래등의 승인)

-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
 1.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동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 11 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
 2. 회사의 주요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), 특수관계인, 이사와 상법 제 542 조의 9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. 다만 동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 총액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이사회는 제 1 항의 거래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

경영판단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8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8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199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 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개정증권거래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본 정관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칙제정)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진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
제3조(적용범위)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세칙제정)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진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
제3조 (적용범위)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본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 11조, 제 17조, 제 37조의 2, 제 40조, 제 52조, 제 56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주식회사 웅진홀딩스등과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에 2012년 8월 15일 체결되고 2012년 8월 29일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코웨이홀딩스 주식회사로 이전된 주식양수도계약 및 그에 대한 2012년 11월 9일자 수정계약에 따른 중도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지급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주식회사 코웨이홀딩스와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사이에서 2018년 10월 29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종결 시점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30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제8조, 제13조, 제14조, 제18조의2, 제19조의 개정사항은 「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주식회사 웅진씽크빅과 넷마블 주식회사 사이에서 2019년 12월 30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종결 시점부터 시행한다.

